

道 청약통장 해지 급증, 부동산 경기 살릴 방안은

강원일보 오피니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약통장(종합저축)은 62만3,088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말 도내 청약통장 수는 65만6,225개로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후 9개월 연속 해지가 늘고 있다. 이 기간 통장 수는 3만3,137개(5.05%) 감소했다. 청약통장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된 것은 분양시장 침체 때문이다.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만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되던 시절에는 청약통장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단이자 제일 효과적인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청약통장의 효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아파트 거래는 반 토막이 났다. 거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4월 전국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4월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6% 낮아졌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변동률은 1.82%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 1월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예치금은 100조1,8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치금이 정점을 찍은 지난해 7월 105조3,877억원보다 5조2,028억원(4.9%)이 감소한 것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100조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입자 수는 2022년 7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올 1월 가입자는 2,774만명으로 지난해 6월 2,860만명에 비해 86만명 줄었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 추가 하락 전망으로 거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내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고용 및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 침체, 소비 감소,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을 연쇄적으로 불러올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동산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검토해 봐야 한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지역경제마저 깊은 침체기에 빠져들 수 있다.

출처:강원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구시대의 유물’ 돼 가는 한국 대학들, 남은 시간 많지 않다

조선일보 오피니언

정부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Global+Local) 대학 심사 결과 신청 108대학 중 15곳(19대학)이 예비 선정됐다. 이 대학들의 특징은 학문·학과 간 칸막이, 대학과 대학 간 벽, 대학과 지역 산업계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개혁안을 낸 것이다.

부산대·부산고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충북대·한국교통대 등 4곳은 두 대학을 하나로 합치겠다고 했다. 포항공대·울산대 등은 지역사회·산업계 연계율, 한동대·순천향대 등은 과감한 학문·학과 간 벽 허물기를 제시했다.

지금 우리 대학들 상당수가 치열한 연구와 수업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교수들의 편하고 안정된 직장이 돼 있다. 세상이 인공지능(AI)과 ‘챗GPT’ 시대로 무섭게 변하는데 교수들은 낡은 교과목을 붙들고 저항하는 대학이 한둘이 아니다.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이 매년 수천 명씩 모자라는 일이 벌어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도체만이 아니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IT 분야, 배터리·바이오·전기차 등 첨단 산업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낡은 과목을 철밥통으로 붙들고 있는 교수들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학은 사회에 짐이 될 뿐이다. 대학 전체 정원 내에서라도 학문별 정원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과 구분 시대는 끝난 지 오래다. 학과는 교수들에게는 중요하겠지만 학생에게는 필요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 돼가고 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도 대학 서열화 해소 등 사회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이 대학들이 과감하게 문호를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서울대가 지방 국립대와 강의를 공유해 일정 학점 이상을 따낸 학생들에게 부전공을 인정하는 등으로 개방하면 ‘교육 지옥’을 해소하는 전기의 하나가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저출생 여파로 20년 후에는 대학 재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그런데도 대학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다. 이번 최종 글로벌대학 30곳에서 탈락한 대학 중 상당수는 사실상 독자 생존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사립대 구조 개선법도 늦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국회에는 학교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의 최대 30%를 설립자 등에게 해산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부실 대학 연명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일정 비율의 해산 장려금을 지급해서라도 부실 대학 구조 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세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 변화를 선도해야 할 대학이 오히려 가장 늦게 움직이는 짐이 되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출처:조선일보 오피니언

외교부

분실 여권, 더 쉽고 빠르게 찾는다

- 한 달 이상 걸리던 처리업무, 빠르면 이틀 이내로 단축 -
- 여권 습득·수령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개시 -
- 이송 신청으로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수령도 가능 -

- 외교부는 6.20.(화)부터 경찰청,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경찰서, 공항 등에서 습득한 우리 국민의 분실 여권을 시군구청 등 여권업무대행기관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분실여권을 등록하는 즉시 분실·습득여권 수령 안내 알림 카카오톡을 여권 명의인에게 자동 발송한다.
 - 이로써 분실 여권이 시군구청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던 것이 이제 빠르면 이틀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 여권이 신속하게 전산망에 등록된다 해도 그 행방을 재빠르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국민에게 익숙한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구청 여권과에서 분실(습득) 여권을 전산망에 등록하는 즉시 자동으로 여권 명의인에게 수령안내 카카오톡이 발송되도록 한 것이다
- 신속함에 편리함도 더했다. 습득·보관 장소가 거주지와 먼 곳에서 발생하여 직접 찾으러 가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과에 방문하여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된다. 외교부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편 분실 신고된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영구히 무효화되도록 엄격한 보안정책이 요구된다. 그 결과, 분실신고 된 여권이 습득 될 경우 유효한 여권에 비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아쉽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외교부는 향후 분실신고되어 이미 무효화된 여권에 대해서도 앞서 소개한 ‘분실·습득여권 수령안내 알림서비스(카톡발송)’, ‘습득여권 이송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의 여권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분실 여권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분실여권 찾기 서비스’가 국민들의 여행 준비에 도움이 되어 불필요한 여권의 재발행을 줄이고 소중한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천만 여권 시대. 내 여권을 분실하거나 남의 여권을 습득하는 일 모두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일상의 사건인 셈이다. 그래서 더욱 “알아서 챙겨주는 정부”가 필요하다. 분실신고도 직접 갈 필요가 없다. 정부24, 영사민원24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실물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 -

- 빠르면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1.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2.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 예컨대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한창섭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 선거권, 연금수령 기준 등 기존에도 만 나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 -
-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연령, 병역의무 등은 만 나이 적용 예외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급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 ③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 ④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 ② (주류·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 ③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 이 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정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를 위한 지방의회지표 개발 : 지표 현황과 대안

 김 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 논의의 필요성

- **(지방의회지표의 의미)** 지방의회 특성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로, 일반적으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측정하고 입법·감사·행정부 통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함. 조례안·청안 처리율, 위원회 활동, 의회의 부패수준 및 투명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음
- **(타 정부기관·시민과의 데이터 공유 필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 173070호, '20.6.9. 제정 및 '20.12.10. 시행)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역시 데이터 공유·분석 및 정책활용을 위한 데이터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지방의회의 효과적 운영)** 의장, 부의장, 상임 및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하부조직이 존재하는 지방의회는 지표의 생산과 관리를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효과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지방의회의 상대적 위치 파악, 예산·인력 등 재원의 효율적 배분, 환경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가능함

2. 주요 쟁점 사항

- **(국민국가 의회 지표 중 지방의회 도입 가능 지표)** 국민국가의 의회 관련 지표는 전세계적으로 다수 생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입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담론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지표의 맥락은 분권화·민주화·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 **(지방의회지표의 분류기준)**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지방행정의 발전 및 인구감소·산업구조재편 등 환경변화를 반영함. 특히 주민 주권, 기관구성 다양화, 지방의회 책임성과 같이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담고 있음. 따라서 이에 근거한 지표분류 체계를 제안함
- **(현재 지방의회지표에 대한 평가)** 2022.12 기준으로 수집가능한 지방의회 관련 지표는 총100개로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신뢰성, 접근성, 지표활용도에 대하여 평가함
- **(지방의회지표에 대한 제안)** 2022.12 기준으로 필요한 지방의회 관련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제안 및 연구진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후, 필요성, 측정가능성, 활용가능성을 평가함

3. 지방의회지표의 현황

- **국민국가 의회 지표 중 지방의회 도입 가능 지표**
 - 의회제도는 국가마다 의원내각제(공화제,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 대통령제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 영국 의회는 예산 승인 외에도 정부 정책 심의, 헌법 개정 관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권력분립을 중시하는 미국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 일반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함(임도빈, 2015)
 - 정당 수, 정치체제 경쟁성, 의회의 합법성, 후원금 금지 여부와 같은 지표는 국민국가 단위에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전체 인구 대비 의원수, 의회 및 정당의 부패수준, 입법부 소속 관료가 사익 추구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가 여부, 의회 능력지수와 같은 지표는 지방의회에서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표1] 국민국가 의회 지표 중 지방의회 도입 가능 지표 예시 •

	지표	기관(출처)
국민국가 ¹ 의회 한정 지표	정당 수	Political Constraint Index, Management dept. at Wharton School, Univ. of Pennsylvania
	정치체제 경쟁성	Polity IV
	의회의 합법성	Institutional Profile Database(IPD)
	정당에 대한 기업의 후원금 금지 여부	IDEA(http://www.idea.int/vt/)
지방의회 도입 가능 지표	전체 인구 대비 의원 수	Political Constraint Index, Management dept. at Wharton School, Univ. of Pennsylvania
	정당, 의회의 부패 수준	QoG standard(Global Corruption Barometer)
	입법부 소속 관료가 사익추구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가 여부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의회 능력지수	OoG standard(Fish and Kroening 2009)

■ 지방의회지표의 분류기준

-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자주적으로 정립하는 권리로, 헌법 제 117조 1항에 근거함
- 자치입법권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인 규칙제정권이 존재함
- 자치입법권은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2022.12 기준으로 통계청(e-지방지표 등), 행정안전부(내고장알리미 등), 교육부(교육통계서비스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에서 수집한 총100개의 자치입법권 관련 지표를 「지방자치법」의 관련 법령에 맞추어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음

• [표2] 지방의회지표의 분류기준 •

대분류	소분류	관련 법령	지표 수
주민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제18조	5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9조	11
	규칙의 개정과 제정, 폐지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 제20조	3
	감사 청구	「지방자치법」 제21조	1
	주민소송	「지방자치법」 제22조	2
	주민소환	「지방자치법」 제25조	1
	정보공개	「지방자치법」 제26조	9
조례와 규칙	조례 규칙 심의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1
	조례 위반	「지방자치법」 제26조	1
선거	선거 결과	「지방자치법」 제36조	9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임기	「지방자치법」 제39조	8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 제40조	12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0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지방자치법」 제41조	1
	지방의원 체포(부패)	「지방자치법」 제113조	1
	행정사무 감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1조	1
	감사 외 기타 권한 행사 결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48조, 제52조	1
	소집과 회기	「지방자치법」 제53조~제56조	3
	의장	「지방자치법」 제57조~제63조	3
	부의장	「지방자치법」 제57조~제63조	2
	위원회	「지방자치법」 제64조~제71조	4
	회의	「지방자치법」 제72조~제84조	8

	회의	「지방자치법」 제72조~제84조	8
	청원	「지방자치법」 제85조~제88조	1
	의원의 사직, 퇴직과 자격심사	「지방자치법」 제89조~제93조	0
	질서	「지방자치법」 제94조~제97조	0
	징계	「지방자치법」 제98조~제101조	6
	사무기구와 직원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04조	6
합계			100

■ 현재 지방의회지표에 대한 평가

- 2022년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 동안 총 30명의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전문가에게 기존 지표 및 새로운 통계 지표에 대한 서면 자문을 실시(김필 외, 2022)
- 기존 지표에 대한 신뢰성(정확성), 접근성(자료 구득가능성), 지표활용도에 대하여 '매우 낮음(1점)'~ '매우 높음(5점)'의 리커드 척도로 응답함
- 평균값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지방의회의원 임기'(M=4.4, SD=0.7), '선거결과'(M=4.2, SD=0.7), '사무기구와 직원'(M=4.1, SD=0.8)임
-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조례제정, 개정, 폐지 청구'(M=4.3, SD=1.0)임
- 가장 높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지방의회의원 임기'(M=4.1, SD=1.0),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M=4.1, SD=0.8), '감사 외 기타 권한 행사 결과'(M=4.0, SD=0.9)임

• [표3] 현재 지방의회지표에 대한 평가 •

대분류	소분류	신뢰성		접근성		지표활용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주민	주민투표	3.4	0.7	2.8	0.7	3.1	1.3
	조례제정, 개정, 폐지 청구	3.9	0.8	4.3	1.0	3.9	0.9
	규칙의 개정, 제정, 폐지 의견 제출	3.9	0.8	3.7	0.9	3.4	1.0
	주민소송	3.2	1.0	2.8	0.7	2.6	0.7
	주민소환	3.1	1.2	2.3	0.9	2.4	0.7
	정보공개	3.3	0.9	2.9	0.9	3.3	1.0
	평균	3.6	0.9	3.1	0.9	3.1	0.9
조례와 규칙	조례 규칙 심의회	3.6	0.7	2.9	1.1	3.1	0.9
	조례 위반	3.3	1.0	3.0	1.2	2.7	1.2
	평균	3.5	0.9	3.0	1.2	2.9	1.1
선거	선거결과	4.2	0.7	3.8	0.8	3.9	1.1
	평균	4.2	0.7	3.8	0.8	3.9	1.1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임기	4.4	0.7	3.9	0.9	4.1	1.0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3.6	0.5	3.0	1.1	4.1	0.8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3.4	0.5	2.8	0.8	3.2	1.2
	지방의원 체포(부패)	2.6	0.9	2.1	0.8	2.7	1.2
	감사 외 기타 권한 행사 결과	4.0	0.9	4.2	0.7	4.0	0.9
	의장	3.7	0.7	3.2	0.8	3.1	1.1
	부의장	3.6	0.9	3.1	0.9	2.3	0.5
	위원회	3.8	0.7	2.9	1.1	3.8	0.8
	회의	3.0	0.9	2.8	1.0	3.1	0.8
	청원	3.7	0.5	2.7	0.7	2.9	0.9
	징계	2.8	1.0	2.3	0.9	2.8	1.1
	사무기구와 직원	4.1	0.8	3.3	0.7	3.8	1.0
	평균	3.6	0.8	3.0	0.9	3.3	0.9
전체 평균		3.6	0.8	3.1	0.9	3.3	1.0

■ 지방의회지표에 대한 제안

- 연구진이 기존 지표를 참고하여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존재하지 않는 지표 중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한 신규제안지표(안)에 대하여 조사함. 새로운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필요성, 측정가능성,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있음', '없음'으로 응답함
- ①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등 다른분야에 비해 신규제안 지표(안)에 대한 필요성과 측정가능성이 높았으며, ② '조례안 접수, 처리내용(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등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③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및 서명인수'는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에서 가장 낮았으며, ④ '위원회별 청원처리'가 측정가능성이 가장 높고 '행정사무 감사결과'가 측정가능성이 가장 낮을 것으로 나타남

• [표4] 새로운 지방의회지표의 제안 •

분류	신규 제안지표(안)	필요성	측정가능성	활용가능성
주민	주민 감사 청구 건수	93.3%	96.7%	90.0%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83.3%	90.0%	80.0%
조례 및 규칙	조례안 접수, 처리내용(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100.0%	96.7%	100.0%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수, 직위(급수), 배치부서 등	93.3%	96.7%	93.3%
	사직·퇴직의원수, 자격심사 건수, 자격상실 의원수	90.0%	90.0%	83.3%
	지방의원 부패관련 지표(기소, 체포 등)	96.7%	93.3%	93.3%
	행정사무 감사 결과(시정,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자료제출 등)	96.7%	86.7%	93.3%
	위원회별 청원처리(소계, 채택, 불채택, 폐치, 철회), 미처리	90.0%	100.0%	90.0%
전체 평균		92.9%	93.8%	90.4%

■ 개선 방안 및 정책적 대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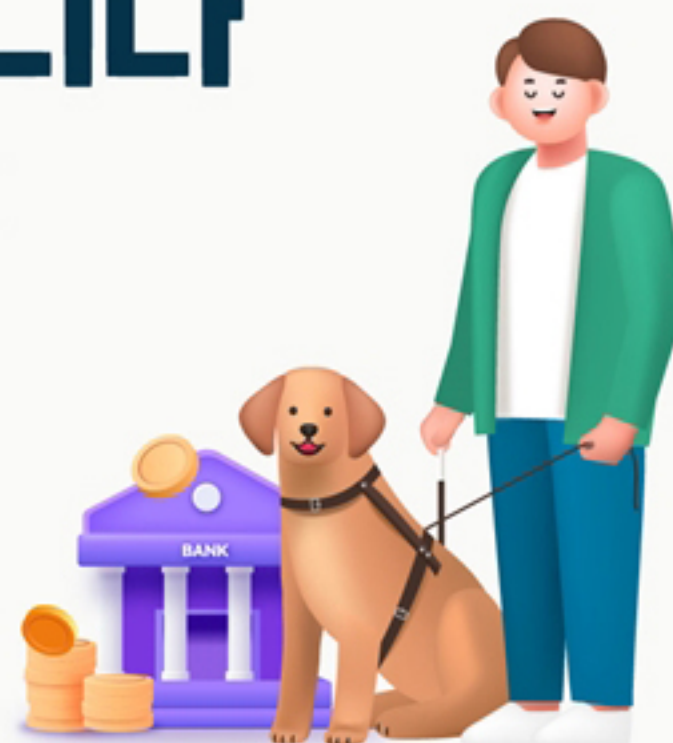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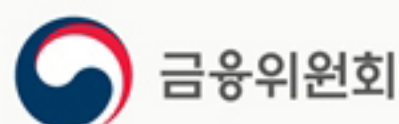
- 이미 발달되어 있는 국민국가 의회 지표 중 적절하게 지표 도입 가능하며 다만 국민국가 의회와 대별되는 지방의회가 함양해야하는 가치에 적합한 지표 발굴이 요구됨
-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표 분류 체계는 법령에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누구나 접근가능하며 오랜 세월 다수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분류체계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다양한 민·관 주체가 지방의회 관련 지표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통일된 플랫폼을 통해 지표의 신뢰성, 접근성,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기존에 생산된 데이터(측정가능성이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지표를 시군구 단위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김 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알기쉬운 정책용어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 마련



**시각장애인이 자필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대출 상품 등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안내절차 또는
응대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등
일부 불편사례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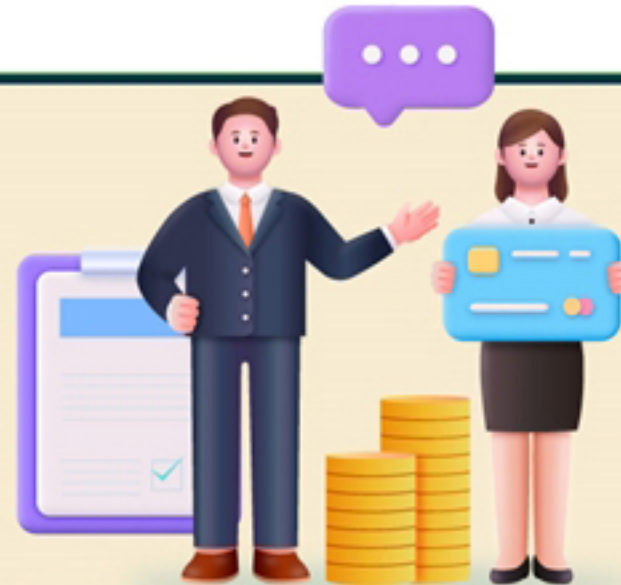


알기쉬운 정책용어

1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 창구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본인의사에 따라 전담창구 이외 일반창구 이용 가능)
- ▶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가급적 지양



2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이나 도움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 ▶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류 작성 보조
- ▶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기재
- ▶ 서명 또는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
- ▶ 보호자가 함께 내점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 가능



알기쉬운 정책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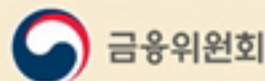
3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 하거나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보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수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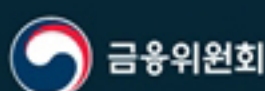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 제공
- ▶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 확대
- ▶ 음성OTP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신청제' 또는 '대리발급제' 활성화



각 은행은 **2023년 6~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6월말**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기업·씨티·대구·제주은행
- 7월초** 산업·SC제일·수협·부산은행
- 7월말** 경남은행



알기쉬운 정책용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일 계획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